

# 예산총칙

2016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  | 737,305,315 | 22,119,159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  | 651,539,800 | 19,546,194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  | 85,765,515  | 2,572,965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  | 69,167,257  | 2,075,018 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| 41,801,312  | 1,254,039 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| 27,365,945  | 820,978 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| 16,598,258  | 497,948    |
| 지하수특별회계                 | 327,000     | 9,810      |
|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            | 9,129,513   | 273,885    |
| 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| 1,509,911   | 45,297     |
|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        | 1,859,675   | 55,790     |
| 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 | 5,660       | 170        |
|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  | 3,718,286   | 111,549    |
|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          | 48,213      | 1,446  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283,723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